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위행위로 합격·승진·임용 시 취소 처분의 소급효 명확화〉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68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위행위로 합격·승진·임용 시 취소 처분의 소급효 명확화(안 제52조의5제2 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성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5. 2.

다. 회 부 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승진·임용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비위행위로 합격·승진·임용 시 취소 처분의 소급효 명확화(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신 설)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 (현행과 같음) - 제1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현행법¹⁾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합격·승진·임용의 취소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소급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임.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비위가 확인된 경우 합격·승진·임용의 취소처분이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취소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2)에 따라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소급효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소급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취소처분의 소급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국가공무원법」³⁾ 역시 현행법과 같이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의 취소처분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개정안과 같이 그 소급효를

2)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취소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합격·승진· 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 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 력이 발생한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